

2026 상반기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

엠북 공사/공단

공부혁명!  
[mbook.kr](http://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별표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2시간 40분 완성, 고득점 가능

도서명 :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

ISBN : 979-11-7393-178-9

발간일 : 2026-01-30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1,000원



#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

## [목차]

제1편 지방공기업법(p3)

제2편 도시철도법(p58)

제3편 철도안전법(p92~145)

##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신설

## 제1편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 [목차]

제1장 총칙(p4)

제2장 지방공사의 설립(p7)

제3장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p14)

제4장 지방공사의 재무회계(p26)

제5장 감독 등(p40)

제6장 보칙(p43)

제7장 벌칙(p55)

## [약어/용어]

법은 지방공기업법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직영기업은 지방직영기업

공사는 지방공사

공단은 지방공단

사장은 지방공사 사장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정책위는 지방공기업정책위

면적단위는 제곱미터(평방미터)

## 제1장 총칙

1~4조

### 1. 목적

가) 법은

-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 합리화함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나)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 2. 적용 범위

가. 법 적용 사업: 수궤자유/ 하주토주/ 공신내

- 다음 사업(부대 사업 포함) 중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각각 적용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2)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

3)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4) 유료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km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5)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6)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이나 주택건설 면적 10만

7)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

8)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 관리 등 수탁

- 주택은 다음 공공복리시설 포함

- 주택 기능발휘와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 공원,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 생활복리 시설

9)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10)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발전/이용/보급 사업

1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나. 지자체(장)

1) 기준에 새로 도달한 사업은 도달 6월내 법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 다음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직영기업, 공사, 공단이 경영시 조례에 따라 법 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 법 적용 사업 중 기준에 미달

- 체육시설업

- 관광사업(단, 여행업/카지노업 제외)

- 3) 기준에 미달하는 **수도**, **공업용수도**, **하수도** 사업은 직영기업 요금 규정 준용 가능  
- 준용하는 지자체 공보에 대상사업 명칭 고시

[참고] 직영기업 요금

- 지자체는 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징수
- 적정, 지역 간 형평, 급부 원가 보상, 기업의 계속성 유지하게 결정
-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납부시 요금의 3/100내 조례에 따라 연체금 가산 징수
- 요금/연체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의 예 따름

### 3. 경영의 기본원칙

-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
-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설치, 설립, 경영시 민간경제 위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저해, 환경 훼손 않도록 노력

### 4.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규정

- 제정/시행시 기본원칙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2장 지방공사의 설립

49~57조

### 1. 설립: 지자체는,

-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시 설립 가능

- 설립 전 시도지사는 장관과, 시군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
- 설립, 업무, 운영 기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2. 타당성 검토

### 가. 설립시 지자체는 미리 타당성 검토하고 결과 공개

- 세부절차/검토기준은 장관이 정함

### 나. 내용

#### 1) 사업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별 수지분석

#### 2) 조직/인력 수요판단

- 3)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다. 전문기관

#### 1) 장관 지정/고시 기관에 검토 의뢰

#### 2) 지정요건은

##### a) 전문 인력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 3년 이상 5명 이상과 5년 이상 2명 이상

##### b) 조사/연구 능력

- 최근 3년내 지방공기업, 공기업,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

### 라. 심의위

#### 1) 지자체장이 의회의원, 관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 2)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설립 여부 심의

3) 구성/운영 사항은 지자체장이 정함

- 위원 1/2 이상은 민간인 위촉 요

### 3. 사업(신설)

- 공사는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간 합의 거쳐 다른 지자체(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로 한정) 관할 구역에서 법 적용 사업 가능

### 4. 공동설립

가) 지자체는 상호 규약을 정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 설립 가능

나) 규약 내용

- 공사 명칭
- 사무소 위치
- 설립 지자체
- 사업 내용
- 공동 처리 사항
- 의결기관 대표 선임 방법
- 출자 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법인격

- 법인으로 함

### 6. 사무소

- 주된 사무소(이하 주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함

- 지자체장 승인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출장소 둘 수 있다.

## 7. 출자

가) 지자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자본금 전액 출자

나) 자본금의 1/2내 지자체 외의 자, 외국인, 외국법인이 출자 가능

- 증자시도 같다
-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해 발행
- 발행 주식 종류, 1주 금액, 주식 발행 시기, 발행 주식 총수, 주금 납입 시기/방법은 조례로 정함

다) 공사가 지자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의 출자 받거나, 해당 지자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시 해당 지자체가 출자한 것으로 봄

## 8.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가. 출자

- 공사는 공사 사업 관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자체장 승인 받아 출자 가능

### 나. 사전검토

1) 출자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자체장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 받음

- 장관 지정/고시 전문기관이 사전검토

- 5억 미만 출자시 전문기관 요건 갖춘 지자체출연 연구원이 사전검토 가능

2) 고려 사항

- 장관은 세부내용과 검토기준을 정해 고시 가능

a) 출자대상 법인 수행 사업

- 적정성

- 사업별 수지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b) 재원 조달방법

3) 다음 사업 수행 위한 출자와 1억 이하 출자는 출자 필요성,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신설, 26년 4월 2일 시행)

- 사장은 지체없이 지자체장과 의회에 제외 사업 내역과 사유 보고

1) 다음 조사/심사 거쳤거나 제외

a)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b)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장 실시 투자심사에 한정

c) 공공기관운영법상 예비타당성조사

2)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거쳤거나 검토 대상에서 제외

#### 다. 출자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이면,

- 각각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50%, 25%, 10% 내

라. 출자한 법인에 다음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시 사장은 지체없이 지자체장에 보고(25년 4월 신설)

1) 최대주주 변경

2) 사업목적 변경

3) 재무구조 급격한 변화

-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 부채비율 100분의 200 이상
-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 50/100 초과

**9. 지자체**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

## **10. 정관**

가) 내용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공고
- 자본금, 사채 발행, 정관 변경
- 공사 조직/정원
- 지자체 외의 자가 출자시 주식 발행과 주주총회 추가

나) 변경시 지자체장 인가 받음

- 단, 공동설립시 지자체 간 규약 따름

## **11. 등기**

가. 설립등기

- 1) 공사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시 성립
  - 2) 자본금 납입 3주내 다음 등기
-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 (정한 경우) 출자 방법

- 임원 성명/주소
- 공고 방법

#### 나. 지사 설치등기

- 설치 2주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사 명칭,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기
- 공사 설립과 동시에 지사 설치시 공사 설립등기와 함께 함

#### 다. 이전등기

- 주사무소 이전 2주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에서,
- 지사 이전 2주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등기

#### 라. 변경등기

- 등기사항 변경(단, 이전등기 제외) 2주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함

#### 마. 등기의 신청

- 사장이 신청
- 다음 증명 서류 첨부
- 설립등기시 정관, 주식인수, 현물출자, 주금납입 및 임원 자격
- 지사 설치등기시 지사 설치
- 이전등기시 주사무소나 지사 이전
- 변경등기시 변경사항

#### 바. 등기기간의 기산

- 인가/승인 사항 있으면 인가서/승인서 도달일부터

## 12. 해산 사유

가) 상법상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상 사유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 명령/판결

- 회사 분할/분할합병

- 주주총회 결의

나) 장관의 해산 요구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3장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

58~63조

### 1. 임원의 임면 등

#### 가. 임원

- 사장 포함 이사 및 감사

- 수는 정관으로 정함

- 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

- 사장 포함 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50/100 미만

#### 나. 임면

1)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 전문 식견, 능력 있는 자 중

## 지자체장이 임면

- 단, 공동 설립 공사는 지자체간 규약 따름

2) 지자체장은 사장과 감사(조례나 정관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자 제외)

임명시 **임원추천위**(이하 **추천위**) 추천 자 중 임명

- 인사청문회 실시시 추천위 절차 불요

## 다. 연임과 해임

- 지자체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도 추천위 심의 거쳐 연임시킴

1) 연임시 고려사항(기준)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상위**, 직전 연도에 비해 현저히 **상승**

2) 해임

a) 다음 경우 해임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 개선 명령 미이행
- 업무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

b) 기준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하위**, 직전 연도에 비해 현저히 **하락**

3) 적용 순서

- **업무성과 평가**